

의안번호	2219896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6.08.28.
추계번호	26C3542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제3항 (보육 이념)	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, 인종, 국적, 혼인, 체류자격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(제3항).	의무규정
2	안 제34조의8 신설 (외국 국적 혼인 외의 출생자의 무상보육 등에 관한 특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민법」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(조정·화해를 포함한다)을 받은 외국 국적의 영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제3항 (보육 이념)	○ (미대상) 영유아가 인종, 국적, 혼인,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육되도록 보육이념을 정비하는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음
2	안 제34조의8 신설 (외국 국적 혼인 외의 출생자의 무상보육 등에 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영유아가 국적, 혼인 및 체류자격에 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함을 현행 「영유아보육법」 상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, ②외국 국적 영유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·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(이하 “인지등”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유아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함
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인지등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무상 보육 및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‘인지등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’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가용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인지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「국적법」 제3조¹⁾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인지등 이후 국적 취득 신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영유아를 지원하려는 취지이나, 현재 해당 집단에 대한 별도 통계가 부재함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1) 「국적법」

제3조(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(이하 “외국인”이라 한다)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(認知)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
1.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미성년일 것
2.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